

『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』 참여기업 모집공고

「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」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정정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8일

구리시장

1. 사업개요

- 가. 지원대상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[별표1] 규정 공동주택, 단독주택
- 나. 사업기간 : 신청자 모집 공고일 ~ 2024. 12. 6. 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- 다. 사업내용 :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(1개소 최대 1000W)
- 라. 사업예산 : 67,308천원 (도비 33,654, 시비 33,654)
- 마. 사업규모 : 총 43.31kW [공동·단독주택 122가구(355W 기준)]
 - ※ 설치용량 및 참여업체 제안가격에 따라 변동
- 바. 지원방식 : 설치 단가의 80% 정률 지원(도비 40%, 시비 40%)
 - ※ 지원단가 기준 : 1580원/W (경기도 수요조사서 기준, 355W 700,000원의 80%)
- 마. 모집업체 : 5개 이하 선정

2.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: 경기도 사업추진 지침 준용[붙임 1]

3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- 가. 접수기간 : 2024. 4. 1.(월) ~ 4. 19.(금) 09:00까지
 - ☞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(‘23. 4월 말 예정)
- 나. 제출서류 : 참여기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[붙임3 관련 서식]
- 다. 접수방법 : 시청방문 혹은 (전자)우편 서류 접수 ※ 마감일까지 원본 제출

· 메일주소 : qjatn123@korea.kr

· 우편주소 :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, 구리시청 별관 3층 환경과

4. 참여기업 유의사항(준수사항)

- 가. **설비 시공기준을 준수**하여야 함 [붙임 4]
- 나. 지원 대상을 상대로 지원신청 홍보·안내문 배부 및 신청 접수 실시
- 다. **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**하고, 설치 방법 및 풍압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자료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- 라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 제13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는 **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제품을 사용**하여야 함
- 마. 설비종류는 “난간거치형”, “옥상형(앙카볼트형, 콘솔형)”으로 구분하며, 제품 사양 및 **설치비용 등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**하여야 함
- 바. 참여기업 신청 시 제안한 가격(원/W)이 설비용량 구간별 평균 가격 대비 +10% 이상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참여업체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
- 사. 특별한 사유 없이 설치가 30일 이상 지연되거나 미 이행시 참여기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**설치완료 후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이행**하여야 함.
- 아. 참여기업 선정 후 지원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례 적발 시 보조금 지급 환수 또는 참여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 - 1) 시공기준(안전기준) 부적합 등 사례 적발 시
 - 가) 1회 : 재설치 요구 또는 참여기업 선정 취소
 - 나) 2회 : 참여기업 선정 취소 및 보조금 미지급(환수)·철거 조치
 - 2) 참여기업 선정 후 임의로 설치제품 및 설치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- 자. 금속 재질의 [붙임 5] 『미니태양광 설비 명판』을 일정 위치에 제작·설치
- 차. **!!5년 이내 설비 철거 시 반환 기준!!** [붙임 6]
 - 1) 설치 확인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 적용하여 보조금 반환
 - 가)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며, 철거 비용은 신청자(시민)와 보급업체의 협의에 따름(**1개월 미만 - 보급업체, 1개월 이상 - 참여자**)
 - 나) **시·군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**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
 - 다) **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**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
 - 라) 단, 소유자의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설치 불가할 경우 미반환

※ 설치 확인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 표

기 간	1개월 미만	6개월 미만	12개월 미만	24개월 미만	36개월 미만	48개월 미만	60개월 미만
환수율 (%)	업체 부담	90	80	70	60	50	40

2) 보급지원사업 참여자 상담 시 반환조건을 필히 명시할 것

5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나.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
- 다.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기업 선정 취소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조치
- 라. 문의사항 : 구리시 환경과(☎031-550-2325)

- 붙임 1.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1부.
- 붙임 2. 평가 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 기준 1부.
- 붙임 3. 참여업체 신청서 관련 서식 1부.
- 붙임 4. 설비 시공기준 1부.
- 붙임 5. 미니태양광 설비 명판(안) 1부.
- 붙임 6. 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1부. 끝.

1. 참여기업 신청자격

-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(지점)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
-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선정 업체(신청 분야 : 태양광) 또는 최근 3년간 태양광 시공실적 100건 이상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
 - ※ 시공실적 : 관련 협회 실적증명서 및 발주처의 확인 완료 건을 인정함
-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
-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(최소금액 1억) 가입업체
 - 설치과정 및 설치 후에 미니태양광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·대물 피해보상
- 자체 내풍압시험성적서,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KS인증서, 전기용품 인증서(KC인증서) 제품 사용 업체
- 생산물배상책임보험(최소금액 1억) 가입, 기업신용평가등급 B0 이상
- 설치제품이 **붙임 4의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충족**할 수 있는 업체

2. 선정방법

- 심사방법 : 자격기준 적격여부 및 배점항목에 의한 상위 순위자 선정
 - 1차평가 : 참여기업 자격기준 적격여부 서류 검토 (적합/부적합)
 - 2차평가 : 배점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

3. 자격기준 적격여부(1차) 및 배점항목(2차)

- (1차평가) 참여기업 자격기준 적격여부(적합 / 부적합)

구분	자격기준	증빙서류	적 / 부
가)	소 재 지	- 사업자등록증(본사, 지사)의 소재지	
나)	제재 처분	-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재 처분 여부 - 최근 3년간 시공실적 100건이상 (주택 또는 미니태양광 100건이상)	

- 상기표의 가)항 및 나)항 모두 적합 시 2차 평가 진행

○ (2차평가) 배점항목에 따른 점수부여

배 점 항 목		배 점	비 고
2차평가	① 기술인력 보유 - 보유현황(12점), 근무경력(12점)	24	계량평가
	② 시공실적 - 설치용량(20점) -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선정 업체(10점)	30	
	③ 기업신용도(10점)	10	
	④ 하자보증기간(6점)	6	
	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(의무)		
	⑥ 제품 가격	20	
	⑦ 제품 사용	5	
	⑧ 제품 효율	5	
2차 소계		100	

○ 동점자 처리기준 : 제품가격(원/W)이 낮은 업체

붙임 2

평가 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 기준

□ 기술인력보유 배점기준(총점 24점)

① 기술인력 보유현황(12점)

○ 산업기사 이상 기술 인력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**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음**

구분	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	배점	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	배점	비고
12점 한도	가. 산업기사 이상		나. 기능사		국가기술회사본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
	① 6인 이상	12	① 6인 이상	7	
	② 5인	10	② 5인	6	
	③ 4인	8	③ 4인	5	
	④ 3인	6	④ 3인	4	
	⑤ 2인	4	⑤ 2인	3	
	⑥ 1인 이하	2	⑥ 1인 이하	2	

② 기술인력 근무경력(12점)

○ 산업기사 이상 기술 인력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**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음**

구분	태양광	배 점		배점
12점 한도	가. 산업기사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		나.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	
	① 800개월 이상	12	① 700개월 이상	5
	② 600개월 이상~800개월 미만	10	② 500개월 이상~700개월 미만	4
	③ 400개월 이상~600개월 미만	8	③ 200개월 이상~500개월 미만	3
	④ 200개월 이상~400개월 미만	6	④ 200개월 미만	2
	⑤ 200개월 미만	4		

※ 기술인력 배점관련 안내사항

1. 기술인력 배점은 보급사업 참여 제안을 하는 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, 기술인력의 근무 경력을 합계하여 산정
2.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근무경력 각각 12점 만점으로 계산함
3. 해당분야의 기술인력이 2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 후 탈락 조치
4. 2024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

5. 건설기술진흥법, 전력기술관리법,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**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,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**
6. 기술사 및 기능장의 경우 기사로 같음하여 인정
7.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
8. 기술인력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(또는 경력수첩) 사본 1부, **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**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하며, **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**
 - *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는 **4대 사회보험(고용보험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)가입 서류만 인정(화면인쇄 불인정)**
 - * 경력수첩 제출시는 해당분야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**확인 불가 시는 불인정**
9. 기술인력의 90일 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함
10.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근무경력의 월단위 합계이며, 기술인력별 1개월(30일)이 되지 않은 잔여일수는 합산하지 않음

예) 홍길동(20개월 20일), 홍길순(3개월 10일)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합계는 23개월(홍길동20개월 + 홍길순3개월)
11.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해당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근무경력을 모두 합한 근무경력을 인정하며, 다른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
예) 홍길동이 한국기업(주)에 입사하여 2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다음에 다른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기업(주)에 재입사하여 12개월 근무했을 경우 홍길동의 근무경력은 36개월이 됨
12. 기술인력이 해당 신청기업 내에 사업자번호가 별도로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
 - 단, 해당 사업장이 신청기업에 소속된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(미제출 시 불인정)
13. 신청업체명은 사업자등록증 업체명과 일치해야 하며, 신청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하기 때문에 불일치 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음

□ 시공실적 배점기준(총점 30점)

① 시공실적(20점)

한도	설치용량(KW)	배점
5점 한도	2,000이상	20
	1,500이상 ~ 2,000미만	15
	1,000이상 ~ 1,500미만	11
	500이상 ~ 1,000미만	8
	500미만	5

②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(태양광) 선정 업체(10점)

한도	태양광	배점
10점 한도	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(태양광) 선정 업체	10

※ 시공실적 배점관련 안내사항

1. **시공실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**
(실적 인정기간 : 2021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)
2.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-66호 “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”에서 정한 사업, 발전차액지원사업, 공공기관 자체사업,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3. 시공실적확인서(시공실적증명서)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
- 발주자가 발급한 시공실적확인서의 경우 확인서 내 반드시 **사업분야, 시공용량, 시공개소, 시공금액, 발주처 확인 담당자, 전화번호 표기** (별도양식 없음)
4. 주택지원사업, 건물지원사업, 지역지원사업, 융복합지원사업,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대체가능
- 시공실적증명서(시공실적확인서)는 **2021.1.1.~접수완료일까지 발행한 서류**에 한하여 인정
5.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,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
6.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

□ 기업신용도 배점기준(총점 10점)

구 분	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	배 점
10점 한도	기업신용평가등급 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	10
	기업신용평가등급 BBB+, BBB0, BBB-, BB+, BB0, BB-	8
	기업신용평가등급 B+, B0	6
	미제출	0

※ 기업신용도 배점관련 안내사항

1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
- **공공기관제출용 「신용평가등급확인서」를 제출**하여야 하며,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접수마감일 이후인 것에 한함
-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만료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불인정(0점처리)
2. 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**공공기관제출용 「신용평가등급확인서」**가 아닌 경우 불인정(0점처리)
※ “신용평가등급확인서”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
- NICE평가정보, 서울신용평가정보, 나이스디앤비, 한국기업데이터, (주)이크레더블, 코리아크레딧뷰로
- 관련근거 :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 (www.fss.or.kr)

□ 기업자력 (총점 6점)

구분	판 단 요 소	배 점						
6점 한도	○ 하자보증기간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기준</th> <th>배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○ 하자보증기간 5년(기본)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○ 하자보증기간 6년 이상</td> <td>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준	배점	○ 하자보증기간 5년(기본)	5	○ 하자보증기간 6년 이상	6	6
	기준	배점						
○ 하자보증기간 5년(기본)	5							
○ 하자보증기간 6년 이상	6							
	○ 시공 완료 후, 신·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('24년 가입 예정) 여부 * 보험 계약체결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보험 청약서 등) 제출 <상품명 : 생산물배상책임보험(1) 완성작업위험 및 대위권 포기 특약, 보상한도 : 대인대물 일괄 1억원, 보험기간 : 1년>	의무 (미제출시 선정 제외)						

□ 제품가격(원/W) 배점기준(총점 20점)

평가 기준	배점
기준가격(원/W)의 100%이상	0
기준가격(원/W)의 90%이상 100%미만	10
기준가격(원/W)의 80%이상 90%미만	15
기준가격(원/W)의 70%이상 80%미만	20

※ 기준가격 : 1,971원/W (근거 : 2024년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수요조사 기준)

※ 설비용량별 제품가격(원/W)이 다른 경우, 높은 제품가격(원/W)을 기준으로 평가

□ 제품사용 (총점 5점)

제품별 원산지	모듈		인버터		비고
	국산	외산	국산	외산	
배점	3	0	2	0	국산임을 증빙하는 서류

□ 제품효율 (총점 5점)

모듈 효율	19% 이상	18% 이상 19% 미만	17% 이상 18% 미만
배점	5	3	1

※ 평가대상 : 모듈 규격서

- 참여제안서에 제출하는 전체 모듈 제품 중 최저 효율 모듈 기준으로 적용
- 효율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

2024년 구리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계획서(참여기업)				
참여기업명				
작 성 자	소속		핸드폰	
	성명		E-mail	
<p>1. 참여기업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인력 보유현황 * 기술인력 보유인원 및 근무경력 현황 / 증빙자료 첨부파일 제출 ○ 시공실적 * 최근3년간 시공실적 ○ 신용평가등급(발행기관) *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등급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				
<p>2. 제품의 적정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치용량 및 시공제품 세부사항(장단점 기술) ○ 설치제품의 안정성 확보방안 ○ 설치단가 및 세부내역 * 참여기업 선정 후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 인상불가. ○ 제품 및 설치사진 ○ 설치완료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				
<p>3. 사후관리 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/S 사후관리 체계 ○ 사용자 교육 및 유지보수 매뉴얼(유지관리 지침서)의 적정성 				
<p>4. 사업 추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체 신청인 모집 및 시민대상 홍보 계획 등 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2024년 구리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 년 월 일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10px;"> 상 호 명 (인) </div>				
<p>구리시장 귀하</p>				

[별지 제1-2호]

공 사 원 가 계 산 서

○ 설비용량 : W

항목	금액	구성비	구성비율(%)	비고
1. 순공사비	0			
가. 재료비	0		공급가액의 %	
1) 직접재료비				
2) 간접재료비		직접재료비의 %		
나. 노무비	0		공급가액의 %	
1) 직접노무비				
2) 간접노무비		직접노무비의 %		
다. 경비	0		공급가액의 %	
1) 일반경비				
2) 기타경비				
2. 일반관리비	0		공급가액의 %	
3. 이윤	0		공급가액의 %	
공 급 가 액	0		100%	
부 가 가 치 세		공급가액의 10%		
합 계(설치비)				

세부내역서

○ 설비용량 : W

품명	제조사	규격	수량	재료비		노무비	경비	비고
				단가	금액	금액	금액	
모듈(000W)								
인버터(000W)								
거치대(000W급)								
케이블								
기타 등								
"								
"								
"								
소 계								

※ 제조사 및 규격(모델명, 사이즈)등을 정확하게 표기

[별지 제 1-3호 서식]

미니태양광 설비 참여기업 공급제품 현황(샘플)

업체명 : (주)○○○

구 분		설 비 용 량		비 고
		000W(00형)	000W(00형)	
태양광 모듈	제조사			
	모델명			
	규격(mm)			
	효율(%)			
	무게(kg)			
인버터	제조사			
	모델명			
	용량(W)			
설치가격				
공급제품 사 진	태양광 모듈		현장설치 사진	
	인버터		현장설치 사진	

첨부 : 제품 설명자료 등 참고자료

1. 시공기준

가. 공통기준

- 1)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의 주요자재(모듈, 인버터, 모니터링 장치, 모듈 거치대)는 의무적으로 생산 물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,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.

나. 태양전지판

- 1) 태양광 모듈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(KS 인증 제품 포함)된 제품만을 사용한다.
- 2) 모듈의 설치장소에는 수목, 건물 등으로 인한 음영이 없어야 한다.
(현장 확인 점검표상에 방위각 정확히 기재 요망)

다. 모듈 거치대

- 1) 태양광 모듈을 난간에 거치 시 2개소 이상 견고히 결속하여야 하고, 거치대는 내풍압 시험 성능 검사 적합제품 사용한다.
- 2) 옥상형의 경우 앵커볼트 및 구조물은 용융아연도금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진단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.
- 3) 거치대 설치 후 시설물의 추락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설치한다.
- 4) 모듈거치대는 스테인레스, 또는 용융아연도금 등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5) 거치대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노후화된 건물이나 설치장소의 균열 등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발견 시 지지력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

라. 전기배선 및 접속함

- 1) 외부 노출 배선은 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수처리 및 몰딩 처리한다.
- 2)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전용콘센트를 설치하여 연결한다.(전용 콘센트가 아닌 경우 안전이 확보 되어야 함)

마. 인버터

- 1)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(KS 인증 제품 포함)된 제품만을 사용한다.
- 2) 절연이 확보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고,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.

바. 기 타

- 1) 참여기업 선정 시 모듈 및 인버터는 원칙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2) 신청인에게 운전교육 및 매뉴얼을 제공하고,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, 작성하여 제출한다.
- 3) 시공업체는 설비소유주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, 운전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.
- 4) 시공업체는 설치완료 후 하자이행증권(5년) 또는 5년간 무상하자보증이행을 약속하는 하자이행각서나 보증서(5년)를 소비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경기도와 해당 시·군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시공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 제7조(시공기준 등) 중 태양광 설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미니태양광 설비 명판 서식]

[명판]

설비명	미니태양광 발전설비(W)	
용량	모듈 : ○ W x ○ EA, 인버터 ○ W x ○ EA	
관리번호		
준공년월		
하자보증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(년) (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)	
설치 전문기업	기업명 :	
	대표전화 :	
	홈페이지 :	
	시공 및 A/S 책임자	성명 :
		직통전화 :
	휴대폰 :	

※ 본 설비는 구리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설비로 용도전환, 준공 5년 내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리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구리시 환경과
(031-550-2325)

○규격 : 가로 12cm × 세로 16cm

○재질 : 바닥판-아크릴
(투명아크릴 합체)

○색상 :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

○부착방법 :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

